

구조 개편에 따른 새로운 공급약관의 제안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고찰

김정훈
총의대학교
권대우
한양대학교 법학과

A Propose of New Terms for the Supply of Electricity and Considerations of Technical Terms

Kim, Jung-Hoon
Hong-Ik University

Kwon, DaeWoo
Hanyang University

Abstract - New terms for the supply of electricity are proposed when wholesale market open and technical terms as power factor etc. are considered.

1. 서 론

지금 전 세계는 놀라운 통신 및 컴퓨터에서의 기술 발전은 전력 분야에서도 영향을 미쳐 과거 자연 독점이라고 생각되었던 전력 사업의 구조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 수직 독점체제로 하나의 전력회사를 형성하여 모든 국민에 대한 무조건적으로 전력을 공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시키게 되었던 것이 경제적이라는 환경에서, 정보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새롭게 실시간 전력시장이 등장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전력 거래 시스템이 발생하게 되면서 독점기업체제는 기능별 경제 주체들로 구성되는 자유화 체제가 되었다. 경제 주체들 사이에는 에너지, 정보, 현금 측면에서 상호 연관성을 갖게 되면서 소비자와 전력회사 간에는 새로운 형태의 공급 계약이 필요하게 되었다.

2003년에 시행 예정이었다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양방향 입찰(TWBP)이 도입되면 지역 독점 배전회사가 등장하게 되고 최종단계에서는 지역독점 체제로 자유화되면서 소매 경쟁으로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지역독점 배전회사가 등장하는 도매 경쟁단계로 진입하기 앞서 모든 배전회사가 기준으로 삼을 전기 공급 계약이 약관 형태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배전독점을 하고 있는 한국 전력과 소비자 사이의 단순한 하나의 공급약관체제에서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경쟁하는 배전업체의 다양한 거래조건을 포함하는 약관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전력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기공급약관은 수직 독점 체제에서 사용하는 약관으로 그 체계면에서 내용면에서 일본의 전기공급약관을 지나치게 모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계약법 체계 특히 새로운 약관규제법 시스템에 따른 편입통제, 해석통제, 내용통제의 3가지 규제 틀에 충분히 적합한 내용으로 정돈되어 있지도 못한 듯하다. 게다가 전기공급계약의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적지 않은 계약의 성립, 계약당사자의 확정, 계약당사자 사이의 권리 의무관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많은 분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일방적으로 한국 전력에 의하여 작성된 약관에 의하여 경우에

따라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이지 않을 정도의 부담만 인정되고, 그 권리의 설정이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계약법적인 입장에서 한전과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한 확정과 계약 성립 과정에 대한 보다 투명한 정립, 그리고 개별 계약자와 한전 사이의 권리 의무관계에 대한 보다 명확한 관점에서 보편성 있는 언어로 구성된 계약서의 기본요소가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약관에 언급되어 있는 기술 사항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공급자 입장에서 일방적인 면이 보인다.

본 연구는 전기공급약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계약법적인 분석을 시작으로 비교법적인 점검을 통하여 지나치게 일본의 약관에 동조된 점을 시정하고 우리의 전기공급계약의 현주소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 중점을 두고, 법률적 및 기술적 관점에서 분석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설계된 도매경쟁단계의 공급약관을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마련하고자 한다.

2. 기존 전기공급약관과 약관의 종류

전기사업법 제16조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약관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이 약관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자원부 장관이 인가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약관의 종류와 기존 약관의 구조는 아래와 같다.

2.1 약관의 종류

가. 판인약관 (약관규제법상 특별약관)

판인약관 (약관규제법 제18조)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
약관심사청구가 있을 경우에 공정위의 심사의 대상이 되지만, 약관의 내용이 불공정한 경우에, 공정위의 직접적인 시정권고,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당해 관청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감독관청의 재량권 존중
- 업무의 전문성 보장

전기공급약관의 전문성과 산업자원부의 감독관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

나. 표준약관

표준약관 (약관규제법 제19조의 2) : '일정한 거

래분야에 표준이 되는 약관'

- 사업자의 비용절감, 노력감소
- 불공정성의 위험 절감
- 소비자의 계약에 대한 신뢰 증가
(예, 전자상거래에서 많은 기업이 공정위에서 추천한 표준약관을 사용)
 - 소비자계약에서의 적정성 유도
 - 가격을 제외한 다른 계약내용이나 조건을 통일함으로써 과다한 경쟁 방지

2.2 기존 약관의 구조

현행 전기공급약관의 전체인 기본공급약관과 상세한 부분과 관련하여 이를 보완하는 공급약관세칙의 2 단계 구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이에 추가적으로 심야전력, 휴가/보수기간조정, 자율절전, 전력부하이전, 직접부하제어, 고효율기기에 대한 특별한 사항과 관련되어 세부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선택공급약관의 2중적 보완체계를 가지고 있다.

기본공급약관은 제1장 총칙에서 제5장 공사비에 이르기 까지 98개 조문에 부칙과 별표로 이루어져 있고, 공급약관세칙은 제1장 총칙이하 제6장 보칙까지 83개 조문과 부칙 및 별표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택공급약관은 각 사항별로 심야전력에 대하여 21개 조문 및 부칙, 휴가/보수기간조정에 대하여 12개 조문 및 부칙, 자율절전에 대하여 10개 조문 및 부칙, 전력부하이전에 대하여 11개 조문 및 부칙, 직접부하제어에 대하여 11개 조문 및 부칙, 고효율기기에 대하여 9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3 약관에서의 기술사항

현약관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술사항은 크게 4가지로, 전기량, 전기계기, 공사비, 안전 등이 그것이다. 전기량등에는 역률등 품질 관련 부분이 두드러진다. 기술적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지상역률 0.9로 세계적으로 높은 반면 진상역률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이지 않다.
- (2) 환산율 등 많은 전기량에 근거가 미약하다.
- (3) 측정기기의 이름 자체가 명시되어 있다.
- (4) 공사비는 개발도상국에서 사용하는 수익자부담 원칙.
- (5) 안전문제는 책임관계를 나누는 정도.

3. 선진 외국의 전기공급약관

3.1 독일 약관의 특성

대륙법의 특징을 갖고 있는 독일 약관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 (1) 시행령이 곧바로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다는 점
- (2) 계약의 서면주의의 (당사자를 보다 분명히 함)
- (3) 내용적으로 책임의 구체적인 상한선이 규정되어 있음
- (4) 고객의 요금 납부 지체시에 최고후 2주 공급정지가 가능한 점/ 추후 완전단전 가능

(5) 고객의 배전회사 교체시에 대비한 해지요건

- (6) 보증금요구권이 배전회사에 부여됨
- (7) 전체적으로 기술적인 사항은 우리의 경우보다 적음.

3.2 영국 약관의 특성

약관의 구조는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상당히 간단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영국런던전기회사의 경우에, 11개 조문(세무항목 포함)에 내용적으로 5-6페이지 정도에 불과하며, Seaboard회사의 경우에는 공급신청서의 뒷면 두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을 정도에 불과하다. 내용의 공정성에 대하여 오프잼을 통한 간접통제가 이루어지며, 에너지 분야의 소비자보호기관인 Energywatch를 통하여 검정되고 있으므로, 특별히 내용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높지 않으나, 새로운 계약법(contract terms act)에 의하여 통제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 약관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 (1) 우리 전기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행정부의 규제자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경우에 포함되어야 할 기준사항이 제시된 면허규정(Licensing agreement)의 내용을 기준으로 약관이 작성되므로, 개별 배전회사의 약관이 주요한 부분에서 동일하며, 소비자의 권리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특성이 있음.
- (2) 서면에 의한 신청과 이에 대한 확인통보 등을 통하여 서면주의가 시행되고 있으며(전화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서면에 의한 통보가 있으므로, 실제로 서면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가 분명하고,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도 교부된 약관에 의하여 비교적 명확하다.
- (3) 공급개시일자도 통보를 받으므로, 권리 및 의무의 개시일이 분명하다.
- (4) 가격 변경권과 배전회사 변경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변경시 요금청구권의 이전)
- (5) 요금지급과 관련하여 지체위약금에 대한 이자율이 정해져 있으며, 채무이행을 위한 금융제공을 전기회사가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담보 및 보증금 요구권도 확보되어 있다.
- (6) 회사의 공급중단 가능성에 대하여 면책 가능성은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책임의 상한액을 정한 경우도 있다.(사기 허위통보의 경우 고객당 100파운드)
- (7) 기술적 사항은 선언적으로 언급만 되어있다.

3.3 일본 약관의 특성

일본의 전기공급약관은 일반규정, 요금규정 및 공사비 부담금으로 나누어진다. 대체로 우리의 경우와 같다.

3.4 미국약관의 특성

미국은 각 주의 전력회사마다 다른 특징을 갖고 있으나 대체로 기본적인 내용이 앞에 있고 구체적인 사안별로 따로 되어있다. 유타전력회사의 경우 13개의 장으로 되어 있고 각 장에는 문제가 되는 사항은 상당히 상세한 규정이 있다.

- (1) 우리 법과 마찬가지로 각 주별로 설치된 공공서비스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작성 시행함.
- (2) 차이는 공공서비스위원회의 관련조문이 비교적 상세하여 그 법령의 내용에 구체적인
- (3) 분쟁해결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 (4) 고객이 재정적인 위기에 있을 경우에 이에 대한 해결책을 공동으로 모색함.
- (5) 신규 고객의 경우에 신용이 불확실하거나 연체 경력이 있는 경우에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음.
- (6) 계량기의 성능 불량으로 인한 요금 반환 내지는 추가 청구 부분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 (7) 수급지점을 기준으로 고객에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하는 부분을 철저히 관찰하려고 하며, 공사비의 경우에도 수익자부담을 관찰하려고 노력함.
- (8) 기술적 내용은 가장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4. 새로운 약관체제의 제안

새로운 약관의 체제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하여 구성하였다.

- 약관을 법률적인 기본구조에 따라 새로이 구성(현약관이 지나치게 비체계적인 일본약관을 모방한 점을 탈피하고, 서방 선진국에서처럼 전기공급계약이란 측면에서 법률적인 관계의 내용으로 접근)
- 소비자가 인식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과 전력공급회사의 업무상 기본지침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보충적인 사항을 구분하여 구성하였음.
- 배전자유화를 고려하여 한전 대신에 배전회사 개념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구성할 것
- 집단계약의 근거조항 신설

가. 전기공급약관의 법적 의미변화

- 전기공급약관의 주요 사항을 고시의 형식으로 제정
- 전기공급규칙(산자부 고시)를 전기공급약관의 인가 기준으로 활용
- 전기공급약관이 전기공급규칙에 합치될 경우에 민사법 규에 따른 약관으로서의 자율성 보장

나. 전기공급약관의 내용적 개선

- 계약사항 중 법리적인 내용 중심으로
- 기술적 사항은 내규 혹은 보충사항으로
- 전기공급규칙(고시)와 합치될 수 있는 내용으로
- 약관규제법에 합치될 수 있는 내용과 형식
- 평이한 용어를 사용하고, 논리적인 구조를 가질 것

5. 결 론

가. 서면계약제의 도입

기본적으로 계약의 체결당사자를 확정하고 한국전력과

개별 수용자 사이에 계약을 서면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계약의 성립과정을 보다 절차적으로 적정하게 계약법의 원리에 입각하여 청약과 승낙의 형식으로 보다 분명하게 처리하고, 계약당사자의 정체성을 확인하여 소유주와 임차인 사이에서의 관계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집단계약에서도 개별가구의 당사자적 지위를 보충적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집단계약의 대표자로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지위를 인정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하여는 계약서를 서면화하고, 그 기재사항을 정형화하고, 이에 기하여 계약 성립과 전기공급계약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관례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나. 간편한 약관체계로의 전환

계약 당사자로서 소비자들이 인식할 필요성이 없는 지나치게 기술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일반 소비자계약의 수준으로 간명하게 구성하고, 평이한 용어를 사용하였다.

다. 기술적인 보충약관의 의미

소비자들이 인식하여야 하는 사항이라기 보다는 일선 실무부서에서 기본약관의 내용을 보다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실무운용의 지침 역할을 할 수 있는 보충약관의 제정이 또한 필요하다.

라. 전기공급약관의 해설서 발간 필요성

실제로 분쟁 자체보다도 분쟁의 해결이 보다 간명할 경우에 많은 민원사항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분쟁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으로 볼 수 있다.

마. 전기공급에 관한 고시의 제정필요성

구조 조정 후 전기공급약관에 대한 라이센스의 요건으로서 필요최소한의 내용을 규정한 고시의 도입이 필요하다.

바. 기술사항 심층 검토의 필요성

진상역률을 도입하고, 환산율 등과 더불어 구체적 근거의 마련과 계기의 이름보다는 측정 기능의 명시를 통하여 기술 발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수익자 부담인 공사비 및 소비자에게 맡기는 안전 부문 역시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국력에 맞게 선진화되어야 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산업자원부의 전력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의한 기초전력연구원 주관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의 일부임

(참 고 문 헌)

- [1] 이상정/권대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해설,
- [2] Anderson & Fournier, "Why Courts Enforce Insurance Policyholders' Objectively Reasonable Expectations Of Insurance Coverage", 5 Conn. Ins. L. J. 335 (1998-1999).